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9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보호·관리를 강화하며,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문화재보호조례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1조).
- 나.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구분을 위하여 전자와 후자를 통칭할 때에는 시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24조의2).
- 라.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함(안 제24조의3).
- 마.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, 가지정문화재,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, 허가사항, 행정명령, 신고사항, 시지정문화재의 공개, 관람료의 징수, 직권에 의한 조사 등 문화재관련법 준용규정은 삭제 함(안 제16조, 제20조, 제23조, 제26조, 제28조, 제32조, 제36조, 제37조 및 제3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재보호법 제8조, 제13조, 제16조, 제18조의10, 제20조, 제25조, 제27조, 제33조, 제39조, 제41조, 제55조, 제58조,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, 제35조,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문화재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 : 2003. 7. 11. ~ 7. 31. / 의견결과 : 접수 1건(반영)

3) 규제심사 : 폐지 2 (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, 가지정문화재),
완화 1 (손실의 보상)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고,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시지정문화재”를 “시지정문화재·문화재자료(이하 “시문화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6호 내지 제8호중 “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”를 각각 “시문화재”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”를 “시지정무형문화재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2항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8조”로 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중 “제20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중 “시지정문화재”를 “시문화재”로, “문화재보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용

역사업 등” 이라 한다)를 발주한 시장 또는 구청장(이하 발주청” 이라 한다)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문화재수리용역사업 :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

2. 문화재수리공사 :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·학술적·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업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하고 우대할 수 있다.

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·절차·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(이하 “기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4인

2.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

2.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

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

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제1항 및 제29조중 “시지정문화재” 를 각각 “시문화재” 라 한다.

제26조·제28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4조중 “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” 를 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35조중 “제23조, 제24조,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지정문화재” 를 “제24조, 제27조,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문화재” 로 한다.

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“시지정문화재” 를 각각 “시문화재” 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제38조” 를 “법 제41조” 로 한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0조(준용) 제39조의 규정은 시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.

제41조제1항·제43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중 “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” 를 각각 “시문화재” 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용역사업 등의 시공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종 전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(이하 “<u>시지정문화재</u>” 라 한다)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(이하 “<u>법</u>” 이라 한다) 제55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<u>령</u>” 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고,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) <u>시지정문화재</u>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) <u>시지정문화재·문화재자료</u>(이하 “<u>시문화재</u>” 라 한다)-----.</p>
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·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의 지정과 해제 2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. <u>시지정문화재</u>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4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. (생략) 6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의 명령 7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의 매입 	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문화재</u> ----- 2. <u>시문화재</u> ----- 3. <u>시지정무형문화재</u> ----- 4. <u>시문화재</u> ----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시문화재</u> ----- 7. <u>시문화재</u> -----

종 전	개 정
<p>8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	<p>8. <u>시문화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9. (생략)</p>	<p>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</p>	<p>제16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</p>
<p>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< 삭제 ></p>
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</p>	<p>②----- 법 제8조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가지정) ①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</p>	<p>< 삭제 ></p>
<p><u>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로 가지정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	
<p>②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효력은 가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.</p>	

종 전	개 정
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22조(준용)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문화재자료에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23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①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(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관리단체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당해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,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,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준용) ----- 제19조----- -----.</p> <p>< 삭 제 ></p>

종 전	개 정
<p>④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,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.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 <p>⑥제20조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</p>	
<p>제24조(수리 등) <u>시지정문화재</u>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)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<u>문화재보호법</u>(이하 “법” 이하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	<p>제24조(수리 등) <u>시문화재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제24조의2 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</p>

종 전	개 정
	<p>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'용역사업 등' 이라 한다)를 발주한 시장 또는 구청장(이하 "발주청" 이라 한다)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문화재수리용역사업 :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</p> <p>2. 문화재수리공사 :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·학술적·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업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하고 우대할 수 있다.</p> <p>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

종 전	개 정
<p><신 설></p>	<p>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·절차·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p> <p>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기술위원회(이하 "기술위원회" 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4인 2.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<p>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 2.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

종 전	개 정
	<p>⑤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</p> <p>⑥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25조(기록의 작성보존)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5조(기록의 작성보존) ① ----- 시문 문화재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허가사항) 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시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, 식물, 광물을 포획, 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 하는 행위</p> <p>2. 시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</p>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3. 시지정문화재(보호물·보호구역과 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(기념물을 표본·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	
<p>제28조(행정명령) ①시장은 시지정문화재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관리·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 <p>1.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</p> <p>2.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,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</p> <p>3. 기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</p> <p>②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</p>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
<p>제29조(문화재의 매입) 시장은 <u>시지정문화재</u>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.</p>	<p>제29조(문화재의 매입) ----- <u>시문화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2조(신고사항) <u>시지정문화재의</u>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, 제2호의 경우에는 신·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. <u>시지정문화재의</u>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 3. 소유자,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<개정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 4. <u>시지정문화재의</u> 소재지의 지명, 지번, 지목,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때 5.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6. 시지정문화재가 멸실, 도난 또는 훼손된 때</p> <p>7. 제26조제1호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 한 때</p> <p>8.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</p> <p>9. 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</p>	
<p>제34조(손실의 보상) 시장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<u>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4조(손실의 보상) ----- ----- ----- <u>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35조(준용) 제23조, 제24조,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지정 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35조(준용) 제24조, 제27조,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시문화재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6조(시지정문화재의 공개 등) ①시지정문화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<신설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,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,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<신설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 <p>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<신설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 <p>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	
<p>제37조(관람료의 징수) ①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.</p> <p>③삭제 <2002. 10. 04 조례 제3125호></p>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제38조(직권에 의한 조사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지정문화재의 현상·관리·수리·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·발굴·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뜨기전 또는 해진후에는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p> <p>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종 전	개 정
<p>제39조(조사요청) ①시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39조(조사요청) ①시문화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 ----- 시문화재 ----- ----- 법 제41조 ----- -----.</p>
<p>제40조(준용) ①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5조, 제16조, 제20조,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정문화재 및 지정 문화재,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40조(준용) ①제39조의 규정은 시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.</p>
<p>제41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(보호물,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명령, 지시,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1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시문화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3조(표창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43조(표창) ----- ----- -----.</p>

종 전	개 정
<p>1. <u>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</u>로 지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</p> <p>2. 관리,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<u>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</u>의 멸실, 도난,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를 관리·보호·육성할 책임이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·보호·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</p>	<p>1. <u>시문화재</u> -----</p> <p>2. ----- <u>시문화재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시문화재</u> -----</p>

관계법령

□ 文化財保護法

제8조 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·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, 2000.1.12>

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1.12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0.1.12>

제13조 (가지정)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(이하 "가지정문화재"라 한다)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④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,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0.1.12>

제16조 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 등"이라 한다)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

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,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,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등(이하 "관리단체"라 한다)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,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, 2000.1.12>

제18조의10 (문화재수리용역·시공의 평가 등)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발주청"이라 한다)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.

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·절차·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1.3.28] [중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1로 이동<2001.3.28>]

제20조 (허가사항)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

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5.12.29, 1999.1.29, 1999.5.24>

1. 명승·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·식물·광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2. 삭제 <1999.1.29>
3.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
4. 국가지정문화재(보호물·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(천연기념물을 표본·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

제25조 (행정명령)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관리·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1.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
2. 삭제 <1999.1.29>
3.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
4.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필요한 조치

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99.1.29, 1999.5.24>

제27조 (신고사항) 국가지정문화재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

같다)의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, 제2호의 경우에는 신·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, 2000.1.12>

1.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
2.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
3.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
4.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·지번·지목·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
5.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
6.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·도난 또는 훼손된 때
7.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
8.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장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
9. 삭제 <1999.1.29>
10. 삭제 <1999.1.29>
11. 동·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

제33조 (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)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,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, 관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

알려야 한다.

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[전문개정 2000.1.12]

제39조 (관람료의 징수)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. <개정 1995.12.29>

③삭제 <2000.1.12>

④삭제<1995.12.29>

제41조 (직권에 의한 조사)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장·관리·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·발굴·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일출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.

제55조 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) ①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29>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29>

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

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지정·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5.12.29, 1999.1.29, 1999.5.24>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"지정"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⑤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5.12.29>

제58조 (준용규정) ①제18조제1항·제4항,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9.1.29, 2002.12.30>

②제8조, 제12조제1항 및 제4항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6조, 제20조, 제25조, 제27조, 제33조,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, 이 경우 "문화재청장"은 "시·도지사"로, "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"는 "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"로 본다. <개정 1989.12.30, 1993.3.6, 1995.12.29, 1999.1.29, 1999.5.24, 2001.3.28, 2002.12.30>

□ 文化財保護法施行令

제10조 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·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(이하 "기술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기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제35조 (시·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기준) 시·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□ 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

제11조의3 (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기술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
2.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
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사업(이하 이 조에서 "용역사업"이라 한다) 및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이 조에서 "수리공사"라 한다)의 선정

2.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

3.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

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. [본조신설 2001.9.8]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

[개정이유]

-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의 개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

[주요골자]

-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를 실시
-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
- 문화재관련 상위법 준용규정(중복)을 삭제함
 -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, 가지정문화재,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, 허가사항, 행정명령, 신고사항, 시지정문화재의 공개, 관람료의 징수, 직권에 의한 조사 등